

제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

1. 심사 경과

- 제출일자및제출자 : 2010. 4. 13. 제천시장
- 회부일 : 2010. 4. 15.
- 상정일 : 2010. 4. 21.(제16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 (제안설명자 : 교통과장 이준덕)

가. 제안이유

- 개정된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과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에 따라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사업을 하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 (안, 제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이광신)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과 동법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
- 행정절차법에 의거 2010년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(1차), 2010년 3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(2차)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.

- 주요 내용으로는 안세3조(차고지의 설치 의무 면제 대상) 개인 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를 면제한다는 조항입니다.
- 본 조례 제정은 영세한 운송사업자(1대 용달화물자동차 : 153대, 개인 택시 : 458대)의 차고지 면제를 규정함으로써 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※ 조례제정 시군 : 청주시, 청원군, 옥천군, 증평군, 괴산군, 음성군

4. 질의 답변 요지

가. 질의요지

- 차고지 설치를 면제하는 사항이 주된 내용임에도,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 주차시 행정처분 대상이라는 의무 규정을 둔 이유는?(권진중 위원)

나. 답변요지 < 교통과장 이근덕 >

- 제4조(의무등) 규정에 대하여는 다소 문제점이 있어 검토가 필요함.

5. 소수의견

“ 없음 ”

6. 토론요지

“ 없음 ”

7. 심사내용

- 산업건설위원장 수정안 발의(김명섭 위원회 4)
- 수정안 가결(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)
 - 안 제4조중 “차고지”를 “차고”로 문구 수정

8. 심사 결과

“ 수정안 가결 ”

9. 심사보고 붙임서류

- 제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.
- 수정안 대비표 1부. 끝.

제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1430
------	------

제안연월일 : 2010. 4. 21.

제 안 자 : 김명섭 위원회 4인

1. 수정이유

조례안 제1조는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, 조례 목적에 맞도록 문구를 바르게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안 제4조중 “차고지”를 “차고”로 한다.

제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
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중 “차고지”를 “차고”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원 안	수정안
<p>제4조(의무 등)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 받았다 하더라도, 주차장 또는 <u>차고지</u>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, 위반할 경우에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또는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.</p>	<p>제4조(지원대상) 차고 </p>